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13호
2023. 10. 4.(수)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87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8877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8878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8879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888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888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8882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8883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8884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8885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8886호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23
제8887호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5
제8888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88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9
제8890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8891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889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8893호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4
제8894호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889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8896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8897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8898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8899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8900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8901호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50
제8902호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8903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890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8905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8906호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58
제890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8908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8909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8910호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5
제8911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0
제8912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913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8914호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78
제8915호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0
제8916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917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891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891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8920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8921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8922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8923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8924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92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8926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8927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892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892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8930호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121
제8931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8932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125
제8933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8934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8935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제8936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35
제8937호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8938호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41
제8939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제8940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제8941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8942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제8943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8944호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1
제8945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894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894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8948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8949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제8950호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160
제8951호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895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8953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8954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제895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895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제895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8958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2
제8959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896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77
제896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9
제8962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제8963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186
제8964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9
제8965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1
제8966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89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5
제8968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7
제8969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8
제8970호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
제8971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제8972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7
제8973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8
제89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0

제8975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2
제8976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14

[규 칙]

4590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17
-------	--	-----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876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재해와 재난, 민방위경보를 총괄 지령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시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3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을 비상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방위 경보운영 및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 를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조직) →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
- 민방위경보 지휘체계(평시-서울종합방재센터, 전시-비상기획관)의 일원화를 통해 경보 발령부터 후속조치(대피시설 안내 등)까지 민방위 업무 전반 통합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7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기록물 영구보존과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8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서장으로 한다”를 “부서장이 맡는다”로 한다.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제16조제5항)
-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제1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보완(제18조)
-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제19조)
- 회의 개최 통보, 당연직 위원 대리참석 규정 등 신설(20조제2항,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79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임” 을 “한 차례만 연임”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 를 “전임자 임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1)부시장이 되고” 를 “행정1부시장이 맡고” 로, “서울특별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환경업무”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을 “시장” 으로, “위원을” 을 “해당 위원을”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심신쇠약으로” 를 “심신쇠약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있는” 을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를 “시” 로, “되고” 를 “맡고” 로, “된다” 를 “맡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를 “위원회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명확화(제2조제2항)
-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제2조제4항):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행정1부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발생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제9조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534명” 을 “10,52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41명” 을 “554명” 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 5급 이하 소계란,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 등란,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2					
5급 이하 소계	10,222					
교육공무원 계	554					
교수 등	476			476		
조교	77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市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학부 신설(1개)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라 전임교원(11명) 및 조교(2명) 증원
 - － ’24년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인 교원 충원에 따른 인력 증원(교원 11, 조교 2)
 - － (일반직공무원) 5급이하 △13 → (교육공무원) 교원 +11, 조교 +2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2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전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 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3.5.9.)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와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면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면의결 대상(제8조 제2항)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제3항)
 -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대면과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피한다”를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

5.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

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공문서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하여 「국어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하여 서울시 조례에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하고,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도록 규정함 (제13조제2항제3호)
-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규정과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제17조제2항제3호, 제5호)
-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 (제17조제4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4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접근성 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② 시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접근성 증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취약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함(제3조의2)
-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보장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5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법 제9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시의”를 “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서울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명이하”를 “9명 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함(제6조 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6호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심신장애”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다수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들고 있는 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제2조 ~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7호**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제3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특별시경찰청

제4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부장검사·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부부장검사·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제9조제1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정보를 「경찰법」 제2조”를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를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8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동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의회 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7.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결과 보고서
-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자격제한 등을 규정하여 적정한 규모를통해 안정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관리를 도모하여 다양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높여 민간위탁사무에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위탁”의 정의를 정비함 (제2조)
- 제3자 재위탁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규정함 (제4조)
- 운영평가위원회의 관한 사항(제5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규모의 기준을 규정함(제7조)
-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제한의 관한 사항(제8조)
- 재계약의 횟수 및 기간의 관한 사항(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8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함(제2조~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0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서울시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명확한 용어 정의 및 공공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제2조)
-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1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사무”를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제9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성별”을 “성별, 주거형태”로, “생활수준”을 “생활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경제 활동 참가율을 추가함
(제1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3호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톡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톡킹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톡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7.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8.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
10.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톡킹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스톡킹 피해자들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톡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이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인 경우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 시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2023년 제정된 상위법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적 정합성과 스톱킹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함.
- 스톱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
- 주요사업에 스톱킹범죄 피해자등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제5조 제6호 및 제9호, 제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4호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6조제1항제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친화적”을 “출산 및 양육친화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 양육 관련 부모교육 사업
2. 출산, 양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3. 아동과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엄마아빠 행복주간) ① 시장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육자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엄마아빠 행복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인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태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및 동반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편의공간 확대 지원 및 양육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출산·양육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6 신설)
- 아동 및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제7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6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감정노동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을 ‘노동기본계획’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5조 제4항)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8조 제4항)
-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삭제(안 제18조, 제19조)
- 위원회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를 따르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7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4조, 제59조제1항 중 “공사 사장” 을 “공사” 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2조 제5항, 제14조 중 “10일” 을 “14일” 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 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전연도” 를 “전년도” 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도매시장” 을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 으로, “한다” 를 “하며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제8호의 “재허가” 를 “갱신허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한편,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59조).
-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농안법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을 유통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8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안전보건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 제5항 신설)
-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조제3항 신설)
-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 위원회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 (중전 제14조~제21조)
- 위원회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99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중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과 제3항 중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급병가”를 “입원 생활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3항 제1호, 제3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 취약노동자의 이해를 돕고자 2023년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으로 유급병가와 병기하였으며, 조례상 “유급병가”를 “입원 생활비”로 명칭 변경하여 취약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 치료 또는 검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 적용 기간이 2022.12.31.자로 종료되어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조문 상의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부칙의 적용 기간이 종료된 한시적 지원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 ~ 2호).
- 위원회 명칭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0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실태조사)” 를 “(실태조사 및 평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단순히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사 이후, 올바른 이행 등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 조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1호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예비군대원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군 훈련장”이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로서 제52사단 및 제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수송버스”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제2호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훈련장에 응소하는 경우, 그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송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전체 규율 내용이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제명)
- 지원 대상 예비군을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으로 한정(안 제1조)
- 관련 법령의 정의와 같거나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여 정의(안 제2조)
- 예비군 육성 지원 절차에 대한 근거를 추가 규정(안 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2호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을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통해 서울시 발전과 국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법체계에 맞게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시설물 개보수 경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는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서 삭제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지원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신설함(제6조제6호)
- 제6조제6호의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서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3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의2(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ChatGPT 등 직원들이 급변하는 ICT 기술 트렌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계획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8개월)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나.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9조의 2).
- 다.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 “(이하 “고립청년 “이라 한다)이란 사회적 · 심리적 ·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 · 관리할 수 있다” 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립청년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
7.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
 6.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7.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8.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의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사회적 고립청년의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과 사회적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함
고립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고립 방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제2조제2호)
-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사업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 (제8조 제1항 제6호)
- 지원사업에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규정함 (제8조 제1항 제7호)
-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기능을 규정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사업과 지원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5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증진 추진의무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장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사항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 규정함.(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6호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복지포털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특별시 등록 장애인 수는 391,859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1%이고, 그 중 뇌병변 장애인 수는 39,859명으로 10.2%에 달하고 있음.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뇌병변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해,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연장’ 을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로 확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약자들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립체육시설에도 최적관람석 설치되도록 명시함.

2. 주요내용

-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할 ‘공연장’ 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로 확대함(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8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말소, 타 시·도”를 “주민등록이 말소, 타 시·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바 있음.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 (제2조)
-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제5조제2항)
- 용어 정비 및 조례의 기존 개정사항 반영(제5조제1항, 제6조제1호 및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9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시행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 신설(제10조제5항제4호).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실태조사 등의 시행(제22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0호**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악취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생활악취 및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 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악취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유지관리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 ③ 보조금의 신청, 집행 시기, 구비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신고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받은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보조금의 반환 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시장은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생활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보조금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용어 정의(제2조).
- 사업자의 책무 신설(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 신설(제5조~제6조).
- 위원회 규정 정비(제8조~제12조).
- 보조금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제16조).
- 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1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①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①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①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시장은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 으로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7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μg/m³)	초미세먼지 (PM-2.5, μg/m³)	이산화탄소 (CO₂, ppm)	폼알데하이드 (HCHO, μ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 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 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 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μg/m³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함.
-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6조).
-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
- 위해성·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한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규정(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2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및 표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우수 교육사례 등의 홍보발굴 사항과 표창 등에 대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실태조사 실시 조항 규정 (제 15조)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홍보 사항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3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7호)

2.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4호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및 씨름협회, 씨름단,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고, 씨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씨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씨름과 문화·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6.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씨름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씨름의 날) ①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진흥을 위하여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씨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씨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씨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이자 대표적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씨름 정책 마련 및 추동력 확보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3조)
-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5호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서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서울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제6조에 따른 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만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형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제2조).
-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제5조).
-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8조).
- 웰니스 관광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6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용어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7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선수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숙소에 서의 폭력적 통제,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함.(제10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55조제14항 중 “임대주택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용적률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를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 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5조제1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대 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2011년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된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이 금지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이 삭제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함 (제27조 신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20년 이상 임대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20퍼센트 인센티브 적용함 (제55조제14항)
- 임대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인센티브 10퍼센트를 적용함 (제55조제14항제3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1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재원배분으로 실질적인 균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특별회계의 당면 지속을 지양하고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8조제3호)
-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함 (제9조제4항)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변경함 (제12조제1항)
-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제13조)
-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함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0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은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증가 및 국제교류 수요증가 등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존치가 필요하며,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또한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1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 을 “위임한”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량” 을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에 따른” 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라” 를 “제17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17조제3항” 을 “법 제11조의4제3항 및 영 제17조제3항”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회수” 를 “횡수” 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담금의 100분의 3” 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1” 로, “부가한다” 를 “징수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 를 “자치구에”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부담금 징수율	교부금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6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8
70퍼센트 이상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

※ 부담금 징수율(%) = $\frac{\text{현년도 징수액}}{\text{과년도 미수납액} + \text{현년도 징수결정액}} \times 100$

[별지 제4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사업지위치		대지면적(㎡)		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	지역()	지구()		구역()	
부과근거 규정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	☐ 최초 승인·인가·허가 ☐ 변경 승인·인가·허가 ☐ 준공검사 신청 ☐ 사용검사 신청 ☐ 기타()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외면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용지		
	영 제16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용역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5. 용적률 내역 : ⑤()%

[적용식]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원	원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	원	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원	원
⑥공제액 총계	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⑦부담금	원	원
공제액(⑥)	원	원
⑧경감률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⑦ - ⑥) \times ⑧]$	원	원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부과율(15%)×개발면적(④)×용적률(⑤)/200

주 : ⑧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사업지위치		대지면적(㎡)		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	지역()	지구()		구역()	
부과근거 규정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통보사유	☐ 최초 승인·인가·허가 ☐ 준공검사 신청 ☐ 변경 승인·인가·허가 ☐ 사용검사 신청 ☐ 기타()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건축연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외면적 (※)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

구 분	④공급면적 (㎡)	층수 (층)	⑤세대수 (세대)	⑥면적계(㎡) (④×⑤)	⑦표준건축비 (천원/㎡)	⑧부과율	부담금(원) (⑥×⑦×⑧)
계					-	-	

〔변경내역〕

구분	④공급면적 (㎡)	층수 (층)	⑥세대수 (세대)	⑥면적계(㎡) (④×⑥)	⑦표준건축비 (천원/㎡)	⑧부가율	부담금(원) (⑥×⑦×⑧)
계				-	-		

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전용 면적	㉑ 부과율 (%)	㉒건축 연면적 (㎡)	㉓호수 (호)	㉔면적계 (㎡) (㉒×㉓)	㉕표준 건축비 (천원/㎡)	부담금(원) (㉑×㉔×㉕)	㉒건축 연면적 (㎡)	㉓호수 (호)	㉔면적계 (㎡) (㉒×㉓)	㉕표준 건축비 (천원/㎡)	부담금(원) (㉑×㉔×㉕)
계				-		계				-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원	원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	원	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	원	원
⑭공제액 총계	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⑮부 담 금	원	원
- 주택부문 부과액	원	원
- 주택이외부문 부과액	원	원
공 제 액(⑭)	원	원
⑯경 감 률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15) - (14) \times (16)]$	원	원

주 : ⑯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23.5.16. 시행)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의 차등 교부 근거를 신설하여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산금 징수 비율 변경 및 산정방식 근거 신설(제7조제1항 및 제2항)
- 나.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 근거 신설(제11조제2항 단서 및 별표)
- 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등 내역서 서식 수정(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2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중 “교통관리계정·교통개선분담금계정·주차장관리계정”을 “교통관리계정·주차장관리계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제6조제2항제4호 중 “대폐차:”를 “代廢車:”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규정된 것 이외”를 “규정한 것 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계정별 세입·세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조의2)

나. 회계는 교통관리계정·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3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을 삭제한다.

별표1의 나눔카 이용란을 삭제한다.

별표2 제15호 중 나란 아래에 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데이터센터	0.82
---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나눔카이용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
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아목, 별표1, 별지 제1
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
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고, 서울시 나눔카 활성화 3기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민간 시설물 내 나눔카 배치 유도수단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계수 중 데이터센터 항목 계수 신설

- 별표2의 교통유발계수에서 방송통신시설(대분류) 하에 데이터센터(세분류)를 신설하고, 0.82의 계수 설정

나.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

- 나눔카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4호아목 및 이행기준, 경감비율을 규정한 별표1의 ‘나눔카이용’ 란을 삭제
-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경감을 결정통보서 등 별지1~3호 서식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4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평생교육진흥원을” 을 “기관을”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 소외계층” 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평생교육 진흥책무)” 를 “(평생교육진흥 책무)” 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취약계층” 을 “교육 소외계층의” 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해당연도” 를 “해당 연도” 로, “다음연도” 를 “다음 연도” 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 을 각각 “범위”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를 “학점은행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정될” 을 “인정할”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난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회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회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을 “서면”으로 한다.

- ② 회의는 안전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취약계층”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한다.

제2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위탁하는”을 “위탁하고자 할”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평생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인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평생교육협회를 비상설화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시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5호)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비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함(제7조)

다. 평생교육협의회 비상설 운영 규정을 신설함(제9조제4항)

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관리관” 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으로 한다.

제63조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 을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 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 을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 “기부심사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한다.

제72조제7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75조 중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 을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 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한다.

제81조 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으로 한다.

제88조 중 “주관부서장” 을 “물품운용관”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2. 7.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23. 1. 개정)과 동일하게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명칭 현행화 및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품종 구분(비품(비소모품), 소모품) 기준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제60조 관련 별표2)

나. 회계관직 등 명칭 현행화 및 모호한 표현 구체화

- 회계관직 명칭 현행화: 경리관, 분임경리관 → 재무관, 분임재무관(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2조)
- 위원회 명칭 변경: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 기부심사위원회(안 제66조)
- 모호한 표현 명확화
 - ▶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제2조)
 - ▶ 주관부서장,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8조)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제60조 관련)

1. 물품의 품종 구분

가. 비품(비소모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밖에 물품이나 공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

-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3)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2. 물품의 상태 구분

가. 신 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나.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6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조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관계획” 이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 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 다.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위원회(“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받아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경관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경관사업 시행자” 라 한다)

제4조의 제목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를 “(경관계획수립권자·경관사업자 등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높여야” 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 를 “경관사업자” 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관리” 를 “관리 및 형성에”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그 밖에” 를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 등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개최이후” 를 “개최 이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를 “공청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영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의견제출 방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의 주제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을 따른다.

제11조제1호 중 “연차별”을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및 연차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절성”을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로, “적절성”을 “적정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경관사업”을 “경관사업율”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율”을 “비용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를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드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제25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26조제1항제3호 후단 중 “된다” 를 “맡는다” 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해당 지자체장” 을 “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관형성 및” 을 “경관의” 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을 “위원을 해촉할”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심의·의결” 을 “심의·의결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2. 11. 1. 「경관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경관사업, 경관계획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의 개념 정의에서 수립대상 범위를 “일정지역”에서 “관할지역”으로 변경(제2조제1호)
- 나. 경관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일 개념임에도 “경관사업자”, “사업자”로 각각 달리 사용 중인 용어를 “경관사업자”로 일치되게 정비(제2조제5호, 제4조)
- 다. 경관계획의 내용에 야간경관 형성 및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제7조제5호 및 제9호)
- 라. 공청회 제목을 「경관법 시행령」 제5조와 일치되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정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내용, 발표자 선정 등 세부사항 신설(제8조)
- 마.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에 경관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의 타당성,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추가(제11조)
- 바. 서울특별시가 현재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법 시행령」과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함(제2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7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원활한 계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제5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제2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92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제1항 중 “되고”를 “맡고”로, “된다”를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제2항제7호”를 “제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제5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담당과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이되고, 본부장은”을 “시장이 맡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제관”을 “통제관, 총괄지원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되며”를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로, “업무를”을 “업무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시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시의”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 역할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과 “재난관리주관기관” 을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여 정의함(제2조 제9호 및 제10호).

나. “재난수습 주무부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9호)

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제6조제2항)

라.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규정 신설(제7조제2항제4호)

마.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출석, 대리출석한 위원에 의결권 부여 규정 신설(제9조제4항)

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총괄지원관” 임무 규정 신설(제14조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0호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시장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책 등’ 및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나. 정책 유효성 검증의 실시에 관한 규정(제4조)

다.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라.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역할을 자문기능으로 하고,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하며, 여론조사·의회 권고·위원회 의결 등으로 선정된 검증대상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8조~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1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의안의 비용 추계시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한시적으로 1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마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비용추계서’로 통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조건에 해당하는 연평균 5억원 미만(한시적으로 10억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고, 의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경우에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2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단의 이사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3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인사청문대상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은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

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7항의 시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사청문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의 공개) 인사청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8조(임명철회 건의)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준용규정)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규정함(제1조~안 제3조).
- 나.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다.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활동기간 등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제5조~제10조).
- 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본회의 보고, 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2조).
-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와 비공개 대상, 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15~제17조).
- 바. 인사청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철회 건의 규정을 마련함(제18조).
- 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3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예산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 심의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인사청문)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장의 이사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장과 교육감이 예산반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공사 사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반영현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반영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 심의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55조의2제4항 신설).

나.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5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4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지원 등)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지원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5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공무원” 을 “소방공무원등” 이라 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이” 를 “소방공무원 등이”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8조 중 “소방공무원의” 를 “소방공무원등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의용소방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인력이 소방관련 활동 현장에 투입되는데, 장례지원 대상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바, 장례지원 대상을 형평성에 맞게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변경).

나. 장례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6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관계인”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제3조).

라.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제4조).

마.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기관 및 전용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함(제5조).

바.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안전시설 지원과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제6조).

사. 시장에게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을 규정함(제7조).

아.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7호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7년”을 “7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7.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창업기업 등의 책무) ①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구성한다”를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 창업지원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전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등”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희망한”을 “위촉 해제를 희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산업창업, 재창업,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지원 관련 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정의 신설(제2조)

나.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책무규정 신설(제4조의2 신설)

다. 창업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안전 발생 소집하고, 사유 종료시 해산하도록 함(제9조)

라. 창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화(제11조)

마. 위원회 간사를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8호**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귀금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전시·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금속·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귀금속산업의 국내·국제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제3조)

나. 귀금속산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육성사업 추진, 보조금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7조)

라.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귀금속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마. 귀금속산업 육성정책 공로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39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평소 역무실에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안전방패, U자형 안전막대 등)를 구비·비치하도록 하여,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하도록 함(제5조제5~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0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 제19조제5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두고 있는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지역까지 규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19조제5항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1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5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한다.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

4.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의 미래유산 보존 강화를 위해 미래유산 발굴과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 미래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5조제1항제4호).

나.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규정함(제8조제1항).

다.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15조).

라. 미래유산의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2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 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5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3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2. 전통생활양식 :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본 조례는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 전반을 규정하고 있어, 전통사찰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항 등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별도의 전통사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상 전통사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위임 근거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분을 삭제함(제1조).

나. 전통문화(전통예술, 전통생활양식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1항).

다. 전통사찰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2호의 삭제).

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부분을 삭제함(제9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4호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과 제5조제7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와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수 있어 그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특수하게 보유하고 있음.
- 이에 전통사찰의 보수·운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5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장 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등 조례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제22조제5항, 제26조제6항, 제28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
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안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정의(제2조제10호)

나. 시장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제8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보건의료자원의”을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를 추가함(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에 ‘인력, 병상, 시설 등’을 명시함(제7조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8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및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함
(제7조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9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 마약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소년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중독예방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0호**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의료응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아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제6조).

라.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1호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의약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의약 육성 계획 제출 의무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제18조 단서 중 “2년 미만인” 을 “5년 미만인” 으로, “2년 미만의” 를 “5년 미만의” 로, “2일” 을 “3일” 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연가일수 중” 을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 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별표 3 중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제18조 단서).
- 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함(제24조 제17항).
-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별표 3).
- 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15조).
- 마.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1일에서 최대 4일로 확대함(제2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3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3. 청원경찰·방호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의 설치

제8조(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각종 안전 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함(제6조)

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4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을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와 체계적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공공주택을 포함함(제7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방음터널”이란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형상이 터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방음시설을 말한다.

제2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방음터널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방음터널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방음터널의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방음터널 시설물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음터널 용어 정의(제3조제19호 신설)

나. 방음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부여 및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제16조의3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에의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2.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3.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역축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분담금 중 일부를” 을 “분담금을” 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료 “분담분 중 일부를” 를 “분담분을” 로 개정함(제9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2023. 12. 31.까지)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8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 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마련하여 폭염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제4조)

나.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6조)

다. 시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라.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마. 무더위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바.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사.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59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을 “(공공건축가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사업 또는 마을단위의 사업”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으로,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등 또는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으로,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을 “기획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의 기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빈집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수립 자문

4.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제37조제5항(중전의 제6항) 중 “마을건축가의”를 “공공건축가의”로, “마을건축가는”을 “공공건축가는”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해촉)”을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업무 원칙)”을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공간환경 분야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행정전반의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에선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로 이원화해서 업무의 범위 및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높아 공공건축가로 통합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도 통합에 따른 ‘마을건축가’ 용어 삭제 (제37조~제39조)

나.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관련 사항(제3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결정 사항
3.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⑧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추진의 공익성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통합심의)” 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법 제26조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통합심의위
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 심의 권한이 있는 관련 위원회
- 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1. 시에서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2. 「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
 4.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상
 5.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
 6.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상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상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 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의5(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기 이전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의6(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30조제1항의 검토 및 심의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만으로 시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위원은 해당위원회 심의하는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하며, 제30조제2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을 해당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한다.

⑥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제2항 중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의 상한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text{용적률의 상한}(\%) = a + b + c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α (적용계수) : 2.5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c :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제5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도시재생위원회”를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내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의 상한(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계획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20퍼센트 이상 확보된 경우로 한정하며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text{용적률의 상한}(\%) = a + (\text{임대주택 비율} \times b)$$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 전체 계획용적률(%)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의 상한(단, 준주거지역인 경우 α (적용계수)의 값은 5.0을 적용한다)

조례 제8852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6항 단서 중 “도시재생위원회”를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축, 도시계획,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 여러 위원회에 분산된 심의 사항을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 조정을 통해 완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 도시계획,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1항 등)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계산식을 알기 쉽게 정리함(제50조제1항제2호)

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적용하도록 함(제50조제5항제2호 신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도록 함(제50조제5항제1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2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투명경영을 위한 공개) ① 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조례상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고,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 등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제21조).

나.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규정함(제43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3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4. 긴급 생계비 지원
 5.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3.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4.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5.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피해사실의 조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

나. 조례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하되,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4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전 · 월세종합지원센터

제25조(전 · 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 · 월세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임대차상담 지원
3.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주거지원 안내
4.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
5.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6. 지역별 전세가율 등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제공
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1항 신설)

나.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규정함(제25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5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3.3.28. 개정, ' 23.9.29.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제13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6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식재된 것”을 “조성·관리하는 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일한”을 “일정한”으로, “동일 수종”을 “적정 수종”으로, “식재함”을 “심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립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을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호라목 단서 중 “식재 할”을 “식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충이 될” 을 “상충될” 로, “등” 을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 안전시설” 을 “등의 안전시설물” 로, “경우” 를 “경우에는” 으로, “지체 없이” 를 “즉시” 로,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를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의”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하여 심을” 을 “정할”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가로수” 를 “대상 가로수” 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지치기시” 를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월동중” 을 “월동 중” 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각목” 을 “다음 각 목”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바뀌심기를 요하는” 을 “바뀌심기가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기에 점검” 을 “경우에 실시”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표1의6” 을 “별표 1의6” 으로, “위탁 하여야” 를 “위탁하여야” 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조성 등” 이” 를 “조성 및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를 “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 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로,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 을 “승인을 받”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성 등의” 를 “조성 및 관리의”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리청간” 을 “관리청 간” 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가로수관리대장)” 을 “(가로수 관리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리적” 을 “체계적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정의 등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함(제3조).

나. 가로수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조례명을 현행에 맞게 수정함(제7조의2).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안내표지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금주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자. 근거법령란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제34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표지를 포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 내 금지행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제22조의2 신설)

나.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함(제22조의3 신설)

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제23조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8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관리지표 측정·평가와”를 “관리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숲등 측정·평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도시숲 등을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나. 도시숲지원센터 수행사업에 ‘도시숲 등 측정·평가’ 사업을 신설함(제2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69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육포기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시행령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행령 제9조”를 “영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소요경비의 징수)” 를 “(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수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적절한 시설에 보호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소요경비 등의 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마리 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중전의 제23조) 제2항제2호 중 “긴급보호동물” 을 “사육포기 동물”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행령 제5조” 를 각각 “영 제5조” 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7.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동물 의료지원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2항 중 “자치구”를 “반려견 놀이터의 조성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육포기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동물보호를 강화하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포기 동물’, ‘동물학대’, ‘기질평가’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나. 사육포기 동물 인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8조)

다. 동물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자등의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라.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사육포기 동물 및 기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4조)

마. 반려견 놀이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2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70호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 “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 “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의 제목 “(보호수의 지정)” 을 “(보호수의 지정·고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2항) 중 “관리인 등은” 을 “관리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7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 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
 - 가. 지정 연월일
 - 나.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 다.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 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경우
 - 가.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

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 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보호수의 해제)” 를 “(보호수의 지정해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 을 “천재지변, 화재” 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를 “인한 소실 및 손상 등으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리청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중 “표시할 수 있도록” 을 “안내하는”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의” 를 “등에” 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기” 를 “시행하기” 로, “발생할” 을 “생육에 영향을 미칠” 로,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를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목보호기술자” 를 “수목보호 전문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서울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수를 지정할 때 고시 및 이의신청 사항을 신설함(제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3)

라.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4)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4조)

바. 보호수의 보호에서 행위 제한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제8조)

사. 보호수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의”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조 제목 중 “심의·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약어를 규정하는 등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 운용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수정함(제9조제2항).

나. ‘물순환 시민위원회’ 를 폐지함(제21조~제32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8972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정해야 하므로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73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잠실상수원” 을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8조” 를 “「수도법」 제7조·제7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개선사업” 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 또는 시·도” 를 “국가”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중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를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12월 31일” 로 연장함(제3조의2).

나. 제4조제1항에서 불필요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제4조로 개정함(제4조).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도 보조금은 제외함(제4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로 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제4호 중 “영 제5조에”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에”를 “법 제75조의2제2항에”로 하고,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1조제3항중 “제13조 제2호부터 제3호에”를 “제13조제2호부터 제3호에”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를 “심신장애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중 “간사1명을 두되”를 “간사 1명을 두되”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18조, 제19를”를 “영 제18조와 제19조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규정 등을 신설(제7조의2).

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신설(제8조제2항제5호).

다. 민간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제13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975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간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9.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조사에”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 및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명확성 및 가독성을 높임(제2조1호).
- 나. “불이익조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조와 호만 표시하여 빈번한 개정 부담을 제거함(제2조5호).
-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자구 수정 등 일괄 정비함(제2조2~4, 9호 및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976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해소와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하자검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하자검사를 실시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리청,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리청 시설물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관리청 시설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7. 그 밖에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및 조치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검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서울시 시설공사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과 공무원의 하자검사에 관한 전문성 교육 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다. 하자검사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5조).

라.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제8조).

사.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검사 및 조치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제9조).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590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의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물순환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전"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

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본부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회의 일시, 출석위원 명단, 위원의 의견 및 심의 결과 등의 기록 및 보관
5.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제11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

－ 심의수당: 70,000원/회

－ 참석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

2. 교통비 등 여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지급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관련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 기관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목적(제1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제2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3조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제7조 ~ 제13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